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58 | 2024.10.28 (2024.10.21~10.27)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국정감사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0.21~10.27)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민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이 명의도용·스팸·스미싱으로 이어져 각종 범죄 및 불법행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컸기에 이번 대책은 온라인상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규제특례**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토교통 분야 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해임 신고와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선임 신고를 접수 업무를 광산안전사무소장 위임업무에서 광업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는 「**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복합개발사업의 제반 절차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규제특례 및 공공기여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국가유산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산의 매장·분포 여부를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 시행자의 지표조사 대상과 절차를 삭제하는 등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기업의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약탈적 인수·합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에서 발생한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0인)」**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피출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출자법인의 보유자산 양도차익을 3년간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3년간 균등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2인)」** ,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적용할 때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배당 금액은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2인)」**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를 계산할 때 전문인력근로자 수에 따라 감면한도가 늘어나도록 하며, 자녀장려금 제도와 자녀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주주환원금액 증가분의 일부를 법인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

금융투자상품 등으로부터의 이익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명세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등이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유내역과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2인)」** ,

내국법인에 금융투자상품 등으로부터의 이익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그 이익 등 지급명세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2인)」** ,

지주회사가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간 연장하여 지주회사가 상장자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적정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으로 하여금 가업상속공제 사실 및 사후의무 이행상황에 대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1인)」** ,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현행법에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관리 책무 부여 등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27인)」** ,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인 알뜰폰 사업자(MVNO)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자회사 MVNO 개수를 제한하여 독립 MVNO 인수나 자회사의 신규진입을 금지하며, 재판매 사업자의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25인)**」 ,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을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은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0인)**」 ,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 온라인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

원전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 자원확보를 위하여 ‘원전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며,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세제·금융 지원과 함께 SMR 연구개발·실증, 클러스터 지정·지원, 원전수출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컨설팅, 보조·융자 지원과 특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의원 등 40인)**」 ,

예외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유상으로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4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11/1(금)까지 <기재위>, <정보위>, <여가위>, <운영위> 등의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재위>는 10/28(월) 및 10/29(화), <정보위>는 10/29(화) 및 10/30(수), <여가위>는 10/30(수) 및 10/31(목), <운영위>는 10/31(목) 및 11/1(금)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교육위>는 법안심사소위(10/29)가 예정되어 있으며, <예결위>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10/31)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방안」 발표(개인정보보호위원회) 8
- 지역특화발전특구 內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하는 규제특례 신설 추진(중소벤처기업부) 9
-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국토교통부) 10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13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13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14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14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14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고용노동부) 15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고용노동부) 16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고용노동부) 16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고용노동부) 16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환경부) 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17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18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18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국토교통부) 19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국토교통부) 19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가유산청) 20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22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7인)	2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	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24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1인)	2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1인)	2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2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26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0인)	2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2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2인)	2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2인)	2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28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2인)	29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2인)	30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	3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1인)	3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3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1인)	3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10인)	33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27인)	33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25인)	34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	34
•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박정훈의원 등 12인)	35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3인)	3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0인)	36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36
•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의원 등 40인)	37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8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9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39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39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40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1인)	41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4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4인)	42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42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43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국정감사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5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0.21~10.27) [바로가기](#)

- [기업지배구조] 주주총회 소집권자인 주주에게 명의개서대리인에 대한 주주명부 작성 요청권을 인정받은 사례
- [엔터테인먼트·스포츠] 디아라 사건 관련 ECJ 예비 결정(Preliminary Ruling)과 그 시사점 : FIFA 규정에 미칠 영향
- [방송통신(TM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신속 처리제 도입 및 적극행정 기반 조성 등 노력
- [중국] 중국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 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의 개정과 시사점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7 (2024년 10월 4째주)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방안」 발표

- 인터넷상 노출된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 고도화, 삭제기간 단축
- 주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경찰청 등과 공조 확대
- 국민 참여 통해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보호 문화 정착

2024-10-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음. 명의도용·스팸·스미싱 등에 악용되는 인터넷상 노출된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중인 개인정보 관련 게시물 등을 신속히 탐지·삭제·차단하는 온라인 대응체계가 강화되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노출 탐지 과정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접목하고,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업·협력체계를 갖춘다고 밝힘

그간 공공·민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이 명의도용·스팸·스미싱으로 이어져 각종 범죄 및 불법행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컸음. 이번 대책은 온라인상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5대 과제	1 개인정보 노출 탐지 대응 체계 고도화	4 개인정보 노출 등 방지 실태점검 강화
	2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게시물 신속 차단 조치	5 국민 참여 및 대응 기반 강화
	3 개인정보 불법유통 상습 매매자 단속 강화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개인정보 노출 탐지 대응 체계 고도화

- 개인정보의 노출·불법유통 형태가 단순 텍스트 중심에서 이미지·영상으로 바뀌는 디지털 환경변화를 반영해, 기존 키워드 기반 탐지 방식에 인공지능(AI) 방식을 접목
- 이를 위해 470만여 개 국내·외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대화형태의 검색어를 개발해 적용할 방침
- 아울러, 현재 정형화된 정보(텍스트) 중심의 탐지에서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이미지 정보까지로 탐지대상을 확대하고, 향후에는 딥페이크 확산 등에 대응하여 얼굴 등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도 탐지·삭제할 수 있도록 탐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
- 이와 함께, 다크웹에 유출된 정보 등에 대해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의 조회 범위를 현행 계정정보에서 이메일, 전화번호 등으로 확대하고,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 등과 다크웹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초기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통지·신고 안내도 강화

②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게시물 신속 차단 조치

- 노출 게시물의 신속 차단을 위해 국내·외 주요 포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15개 사업체로 구성된 핫라인 협력체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체 특성별 대응 조치를 체계화하고, 탐지 분류모델을 고도화하여, 불법유통 게시물 삭제에 걸리는 기간을 작년 평균 24.8일에서 '25년 18.9일까지 단계적으로 단축해나갈 예정
- 또한, 인공지능(AI) 학습과정에서 온라인상 노출된 개인정보가 제외되도록 개인정보위가 확보한 노출데이터를 OpenAI·구글·메타 등과 정기적으로 공유

③ 개인정보 불법유통 상습 매매자 단속 강화

- 개인정보가 포함된 대출 데이터베이스 등의 불법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전담 수사하는 경찰청과의 공조도 강화
- 개인정보위·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불법거래 게시물을 프로파일링하여 수사과정에 필요한 맞춤형 데이터를 생성·제공하고, 수사기관은 검거에 활용함으로써 상습매매자에 대해 신속 대응

④ 개인정보 노출 등 방지 실태점검 강화

- 지난 9월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강화에 따라 관리수준 평가결과가 미흡한 취약 공공기관을 집중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법 위반행위 공표 기준을 확대
- 또한, 신산업·신기술 등 산업·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중장기 조사 로드맵을 수립하고, 아울러, '25년에 '디지털 포렌식랩'을 구축하여 유출사고의 디지털 증거(로그, 메타데이터 등)를 신속히 확보할 계획

⑤ 국민 참여 및 대응 기반 강화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노출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캠페인을 운영하는 한편, 중소·영세 사업자의 노출 발생·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및 컨설팅·기술지원을 확대하고, 반복·대량 노출 발생 사업자에게는 취약점 보완을 지원
-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 활동에 동참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연말까지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예정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 內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하는 규제특례 신설 추진

-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 추가 위한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기대

2024-10-22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규제특례 신설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힘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임. ’04년도 처음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그간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총 225개 특구를 지정하였으며, 현재는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임

현행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의료인 등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 중임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총 4곳*이며, 「의료법(부대사업 범위 확대)」, 「출입국관리법(외국인력 고용절차 간소화)」, 「국토계획법(외국인 의료시설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를 적용 중임

* ①미라클 메디특구(서울 강서구), ②스마트메디컬특구(서울 영등포구), ③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부산 서구), ④메디시티 글로벌 의료특구(대구 중구·수성구)

이에 더하여 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해질 경우,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보다 확대되어 관련 산업의 매출 및 고용 증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

- ’24년 3분기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 16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표
-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 심의 절차 간소화 등

2024-10-23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9월까지 매달 회의를 개최하여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힘. 규제개선 과제들은 다음과 같음

①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

- 현재는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나,
- 개발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임

①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

- 현재는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나,
- 개발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임

②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규모 전기공급시설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도로굴착허가의 범위를 확대

-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공사를 시행한지 3년(보도는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긴급복구 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도로굴착허가가 금지되고 있으나,
- 앞으로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 공급시설은 도로공사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굴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임

③ 개발제한구역 내 이미 지어진 주택의 지붕·옥상 등에 설치하는 소규모(50㎡ 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완화

- 통상 허가 없이 설치가능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해 비용·시간 소요 등 주민 불편이 있었으나,
- 주택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에너지시설의 경우 지자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올해 중 개정할 계획임

④ 전문건설업자가 주력분야 추가 등록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

- 전문건설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기재출한 서류(사무실·자본금)를 다시 제출토록 하는 관행으로 불편이 있었으나,
- 앞으로는 등록기준 중 추가되는 항목(기술능력, 시설·장비)에 한해서 심사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임

⑤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공사 예시를 최근 트렌드에 맞게 현행화

- 최근 시공기술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공사 예시가 현행화되지 않아 공사 발주자 등이 혼란을 겪어 왔으나,
-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신공법(입체구성재, 시스템비계공사 등)이 건설업 업무내용에 반영되도록 업계의 의견을 들어 내년 상반기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임

⑥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찰참가 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금액도 조정

- 기본·실시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시 받아야 하는 기술평가 대상금액이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술평가 대상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도 내년 3월까지 개정할 계획임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2025-04-23 시행 예정

종전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은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2025-04-23 시행 예정
-----------	--	------------------

방송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및 소유 제한을 폐지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2025-04-23 시행 예정
-----------	----------------------------------	------------------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25-04-23 시행 예정
-----------	---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와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2025-04-23 시행 예정

우주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및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바, 우주항공청장이 우주산업클러스터 또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 교육감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투자진흥지구에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문화체육관광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5-04-23 시행 예정

애니메이션산업 분야 종사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애니메이션산업 분야에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우대의 근거를 마련함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4-10-22 시행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인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의 이행, 확률형 아이템 정보 등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등을 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2025-04-23 시행 예정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 등의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 외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각 시·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2025-04-23 시행 예정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우대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불공정행위 관련 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회계 내역 및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대중문화예술 관련 계약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1-01 시행 예정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중소기업부장관은 표준약정서를 제정·개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지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업 등이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21호, 2023. 10. 31. 공포, 2024. 11. 1. 시행)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약정서 및 표준계약서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위탁기업 등이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돌봄시설 확대 등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거래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납품대금의 지급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대한 시정권고·시정명령,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등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11-01 시행 예정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약정서를 제정·개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지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21호, 2023. 10. 31. 공포, 2024. 1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34959호, 2024. 10. 22. 공포, 1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의 요건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한 표준약정서 및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2025-06-01 시행 예정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5-10-23 시행 예정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면서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면서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며,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의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6개월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하는 등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2025-10-23 시행 예정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로 확대하고,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계약상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출국금지 요청, 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 배제 등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조건의 보호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고,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여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함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2025-02-23 시행 예정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사용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모성 보호 지원을 강화함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2025-10-23 시행 예정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환경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합리화하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품질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5-03-31 시행 예정

공매도는 미래 시점의 증권가격의 하락을 예상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하여 매도하는 거래기법으로, 매도 시점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결제 불이행 위험 및 투기 등에 악용할 우려가 있어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 외국인·기관투자자의 불법 무차입공매도 적발이 반복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매도 제도를 개선함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0.24. ~12.10.

광산안전법 제13조의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해임 신고가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서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처리할 실익이 없고, 행정기관의 부담완화와 규제 개선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광산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법 취지에 맞게 위탁내용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광산안전법 제13조제3항의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해임 신고와 제13조제5항의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선임 신고를 접수 업무를 광산안전사무소장 위임업무에서 광업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광산안전상 추가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발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한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명령 (제20조제1항제4호나목 개정)
- ② 광산안전법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 “제8항”을 “제9항”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나목 개정)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광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 신설)
 - 광산안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해임 신고의 접수
 - 광산안전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선임 신고의 접수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mailto:stic@kma.go.kr) (전화: 044-203-5264, 팩스: 044-203-4766)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0.23. ~12.03.
-------	--------------------	------------------------

‘공공조달’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공공조달관리사’를 신설하면서 해당 자격의 원활한 검정 시행을 위하여 검정 소관 주무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으로 정하고, 검정의 기준을 명시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mailto:qtc@kma.go.kr) (전화: 044-202-7294, 팩스: 044-202-8035)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235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 계획의 입안,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복합개발사업의 제반 절차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규제특례 및 공공기여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 (안 제2조)

-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지하철·철도·고속버스·공항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정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지역 등 도시 주요지역을 대상으로 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를 지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은 역승강장 경계의 반경 500미터 이내에 있거나 준공업지역으로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혁신지구를 지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 다만,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내 하나의 공동주택단지가 2만제곱미터 이하면서 전체 부지면적의 100분의 30 이하가 되도록 하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도지사등”)이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적 및 비율의 상한을 낮출 수 있도록 함

②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위한 검토의견 제시내용 및 절차 (안 제3조)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 시·도지사등에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복합개발계획의 방향, 혁신지구의 개략적 위치 및 면적, 토지이용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함
- 시장·군수등은 검토의견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의 반영여부 및 사유 등 처리 결과를 제출하고, 시·도지사등은 처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③ 사업시행자 요건 (안 제12조)

- 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한 공공기관에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를 추가하고, 신탁업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거나 주택건설사업 등을 등록하도록 함

④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운영 (안 제14조)

-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로 정함
- 토지등소유자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⑤ 도시·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안 제26조)

- 조례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까지,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의 경우 같은 영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14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⑥ 국민주택규모주택의 공급비율, 공급유형 및 인수절차 (안 제27조)

- 복합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에 대하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비율을,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하고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함
- 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100분의 60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잔여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함
-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도록 함

⑦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 (안 제30조)

-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함
- 영업이익, 시설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 (전화: 044-201-4388, 팩스: 044-201-5666)

국토교통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2024.10.23.
~12.02.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235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동의서, 사업시행계획 신청서, 준공인가신청서, 준공인가증, 임시사용승인신청서 및 조사공무원증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 (전화: 044-201-4388, 팩스: 044-201-5666)

국가유산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0.24.
~12.04.

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으로 이관된 건설공사 시행자의 매장유산 지표조사와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사항 정비

- 현행 건설공사 시행자가 제출하는 “지표조사 보고서”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영향진단 보고서”로 통합·변경됨에 따라 “영향진단 보고서”에 매장유산이 표시된 지역을 유존지역으로 관리 (안 제3조제1항제2호)
- 건설공사 시행자의 지표조사 대상사업 및 절차,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4조·제5조·제6조 삭제)
- 지자체 위임사항 정비 (안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삭제)
- 지표조사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공사 시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안 별표6)

② 국가유산 매장·분포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가·지자체가 실시하는 매장유산 지표조사에 대한 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마련

- 국가·지자체의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 및 검토에 관한 사항 법률 위임사항 마련 (안 제5조의3, 제5조의4)
-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유존지역 보호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 마련 (안 제7조)
-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라 영향진단을 거짓으로 수행하거나 영향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조사기관 등에 대하여 2년 이내 업무정지하거나 등록취소 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안 별표2, 별표4, 별표5)

※ 문의처 :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http://www.kci.go.kr) (전화: 042-481-3131, 팩스: 042-481-3131)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2인)	2024-10-21 발의
-------	--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속에 산업 전반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경제 구조가 심화되고 있음. 대다수의 국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상호작용을 이어가고 있음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커짐에 따라 갑을관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하는 현행 법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플랫폼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명확한 거래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플랫폼 분야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이용사업자의 단체교섭권 및 플랫폼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분쟁조정협의회를 두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와 생태계를 회복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7인)	2024-10-21 발의
-------	--	---------------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 소비자의 선호가 몇 개의 온라인 플랫폼에 집중되어 독과점화 되는 경향이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우월한 지위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업체나 외식업 자영업자 등 온라인 플랫폼을 사업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사업자와의 중개거래에서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함

또한, EU집행위원회가 2017년 Google이 자사의 비교검색 사이트인 Google Shopping을 경쟁사 보다 우대하여 배치한 행위에 대하여 약 24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에 상품이 노출되는 순위(ranking)를 결정짓는 기준이 불투명하여 이용사업자나 소비자들은 노출순위 결정 기준의 공개와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경제가 확대되면서 중소 판매업자나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사업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은 개선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고 이용사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내부 고충처리절차나 외부 분쟁조정 시스템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고, 이용사업자 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중개거래 조건의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전국가맹점협의회와 음식배달 온라인 플랫폼사이에서는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이 체결되기도 하였음

더욱이 최근 ‘티메프 사태’에서 판매자들의 천문학적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이용사업자들의 협상력 높이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층 더 활발해졌음. 한편 EU이사회와 EU의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이사회 규칙」을 제정하였고, 동 규칙은 2020. 7. 12.부터 시행되는 등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가 만들어지는 추세임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사업자들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 부여, 신속한 고충처리와 분쟁조정절차, 피해구제를 위한 단체소송 제도 등을 도입하고자 함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2024-10-24 발의

국내 대부분의 인수·합병은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일반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권리보호 장치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는 EU, 일본, 미국의 경우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수·합병과정에서 일반 소액주주의 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도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의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약탈적 인수·합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되, 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인수·합병의 순기능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의무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안 제146조의2 신설)

- 의무공개매수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의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그 주식을 매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주권상장법인 등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당해 매수등 이후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추가로 의무공개매수하도록 하되,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

② 의무공개매수공고 및 신고서 제출 (안 제146조의3 신설)

- 의무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의 매수등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 매수할 주식의 발행인, 매수의 목적, 매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 의무공개매수조건 등을 공고하여야 함

③ 의무공개매수의 철회 (안 제146조의4 신설)

- 의무공개매수는 철회할 수 없으나, 대항하는 매수가 있거나 의무공개매수자가 사망·해산·파산한 경우 등은 예외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함

④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 금지 (안 제146조의5 신설)

- 의무공개매수자는 선행매수일부터 그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수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⑤ 의무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안 제146조의6 신설)

- 의무공개매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주식을 매수하여야 함

⑥ 의무공개매수에 따른 의결권 제한 (안 제146조의7 신설)

- 선행매수를 한 자가 의무공개매수 공고를 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거짓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결권이 제한됨

⑦ 의무공개매수에 관한 조사 및 조치 (안 제146조의8 신설)

-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정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의무공개매수를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음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2024-10-25 발의

2023년 1월 상법에 대한 법령해석을 통해 결산배당의 경우 배당기준일 이후에 배당액이 결정되어 배당받을 금액을 모르고 투자하여야 하는 이른바 갭감이 배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당절차 개선이 이루어졌음. 이후 전체 상장기업의 40% 이상이 정관에 배당절차 개선을 반영하는 등 준비를 마친 상황임

특히, 2023년 정관을 개정하고 2024년 현금배당을 결정한 322개 상장기업 중 약 34%인 109개사가 갭감이 배당을 실제로 해소하는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결산배당과 달리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에 배당기준일 이후에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여전히 배당절차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분기배당의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결산배당과 마찬가지로 분기배당에 있어서도 갭감이 배당을 해소하려는 것임 (안 제165조의12)

정무위원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1인)

2024-10-25 발의

정보를 다수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 무단삭제 및 사후적인 변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분산원장 기술은 금융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해외 주요국에서도 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하여 기존 중앙집중형 증권 발행·유통 인프라 보다 효율성, 보안성, 시스템 안정성 및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음. 특히 독일의 경우 우리의 전자증권법에 대응하는 전자증권도입법을 제정하면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증권 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발행인도 그 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증권 거래 방식을 혁신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는 2023년 2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발표하여 현행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체계 하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증권, 즉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제도화하기로 한 바 있음

이에 증권의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 제도에 해당하는 전자증권법에서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뒷받침 하에 안정적인 토큰증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 전자증권법 체계에 마련된 총량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1인)

2024-10-25 발의

투자계약증권 등은 권리 내용이 비정형적이고 현실적인 유통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자본시장법 규정 중 발행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비정형적 증권의 경우도 온라인 상에서 다수 투자자 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모든 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유통에 관한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재 증권의 유통은 상장시장에서의 주식 거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다양한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음. 이에 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 등도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 거래를 허용하면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한도를 제한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3년 2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발표하여 현행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체계 하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증권, 즉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제도화하면서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규모 장외시장 제도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온라인·디지털 플랫폼이 발전함에 따라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도 다수 투자자 간 유통시장

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투자계약증권은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있는 단서를 삭제하여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유통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함 (안 제4조제1항)

- ② 상장시장에 해당하는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도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하여 다수 투자자 간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다양한 장외시장의 형성을 가능하도록 함 (안 제166조제1항 신설)
- ③ 장외거래중개업만을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장외시장에서의 다수 투자자 간 증권 거래 중개업무에 불필요한 겸영업무,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및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안 제166조제3항 신설)
- ④ 과도한 고위험 투자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경우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하러 함 (안 제166조제4항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2024-10-22 발의

현행법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지원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09조제3항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2024-10-22 발의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해 다른 분야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전략기술의 구체적인 분야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직접 예시하고 있음

최근 친환경 규제 강화와 정보통신기술 발달은 미래형 이동수단 기술 개발 경쟁을 심화시켰고, 특히 중국은 미래형 선박 기술에 대하여 적극적인 투자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 선박 기술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미래형 이동수단의 범위에 대표적 해상 이동수단인 미래형 선박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 10조 및 제24조)

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0인)

2024-10-22 발의

최근 도시에서 자택의 남는 방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단기임대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공유숙박’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으로 공유숙박의 호스트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이용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의 사업자등록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과 달리,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열 공유숙박 플랫폼은 호스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할 수 있어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유숙박업이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에서 발생한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여 세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53조의2제7항 및 제53조의2제8항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2024-10-23 발의

현행법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소득세, 법인세 및 관세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경영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세특례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본 특례의 일몰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104조의24제1항 및 제118조의2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2인)

2024-10-23 발의

현행법은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당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보유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상환에 사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3년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3년간 균등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채무를 상환하려는 기업이 상환을 위해 양도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도차익으로 인하여 법인세 누진세율 중 높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채무상환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이러한 특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내국법인 자체에 채무상환을 위한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해당 내국법인(이하 “피출자법인”이라 함)에 출자한 내국법인(이하 “출자법인”이라 함)이 그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어 기업의 채무상환과 구조조정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피출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출자법인의 보유자산 양도차익을 3년간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3년간 균등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안 제34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2인)

2024-10-24 발의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적용할 때 공제하는 항목에서 배당금은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참여와 가계 금융자산 구성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현 시점에서 낮은 기업 배당성향을 끌어올려 기업소득이 가계와 국민경제에 환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주주가치 제고 및 환원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 확대를 위한 금융당국과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 증시에 대한 주요 저평가요인인 배당성향을 제고할 수 있는 세제장치의 도입이 시급함

이에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적용할 때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배당 금액은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라목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2024-10-24 발의

현행법은 첨단기술기업이나 연구소기업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최초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을, 이후 2년간은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음. 세액감면의 한도는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상이한데, 여전히 지방에 위치한 기업이 수도권에 밀려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전문인력근로자 고용에 추가적인 세제특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른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금 제도는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한데,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이를 중복 적용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함께 정부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주주환원촉진 과세특례’를 도입하여 주주환원금액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지만, 대부분의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 수익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러한 배당금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세무상 결손이 매년 발생하는 과세구조상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정부안에 따른 과세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를 계산할 때 전문인력근로자 수에 따라 감면한도가 늘어나도록 하며, 자녀장려금 제도와 자녀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주주환원금액 증가분의 일부를 법인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타 상장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과 동일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고자 함 (안 제12조의2제3항 및 제100조의30제2항 삭제, 제100조의33제1항 단서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2인)

2024-10-24 발의

2020년에 현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5년에 도입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이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일원화하여 손익을 통산하고 이월결손금과 기본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20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체계임. 그러나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국내 증권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시행을 재차 유예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음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 과세당국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 일부 자료만 제한적으로 제출받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규모와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향후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 세원(稅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를 국세청 차원에서 취합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투자상품 등으로부터의 이익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명세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유내역과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내역등을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개인에게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이나 이익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명세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안 제164조의6 신설)
- ② 금융회사등은 주식 및 출자지분등, 채권등, 투자계약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을 반기마다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안 제174조의2제1항)
- ③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을 매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안 제174조의2제2항)
- ④ 금융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내역과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내역을 반기마다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안 제174조의2제3항)
- ⑤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유내역 및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내역등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안 제174조의2제4항)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2인)

2024-10-24 발의

2020년에 현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5년에 도입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이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일원화하여 손익을 통산하고 이월결손금과 기본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20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체계임. 그러나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국내 증권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시행을 재차 유예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음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 과세당국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 일부 자료만 제한적으로 제출받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규모와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향후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 세원(稅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를 국세청 차원에서 취합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내국법인에 금융투자상품 등으로부터의 이익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그 이익등 지급명세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20조의5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

2024-10-24 발의

2022년 12월 31일 법인세법 개정(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일부개정)으로 배당금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도입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률이 기업형태(지주·일반회사, 상장·비상장법인)의 구분 없이 일원화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일부 지주회사의 법인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 당시 부칙 제 16조에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1년 동안에는 개정 전 법인세법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과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지주회사에 부여한 세제지원을 갑작스럽게 축소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할 수 있고, 법인세법 개정 이후 지주회사가 개정 전과 동일한 수준의 익금불산입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자회사에 대한 10% 이상의 추가적인 지분 취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1년이라는 짧은 유예기간 동안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시장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주회사가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간 연장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주회사가 상장자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마련하여 주려는 것임 (안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1인)

2024-10-24 발의

상속세 제도는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자유시장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들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의 헌법이념에 따라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아울러 가지는 조세제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자는 이유로, 일정한 가업의 상속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상속세 감면의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기업오너의 자녀들이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감면받고도, 현행법에 명시된 사후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가업상속공제가 특별한 혜택을 감안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으로 하여금 가업상속공제 사실 및 사후의무 이행상황에 대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특별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후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사회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사회적 효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 이행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 (안 제18조의2제11항 신설)
- ② 국세청장 등으로 하여금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공시를 요구하거나 오류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의2제12항 신설)
- ③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국세청장 등으로부터 사후의무 이행상황 공시 또는 이미 공시된 오류의 시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지정된 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 (안 제87조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024-10-24 발의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해당 특례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민간기업의 출연 확대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음. 그러나, 특례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 동시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공제비율이 낮아 참여 확대의 유인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및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인세 공제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하고, 감면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3)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의원 등 11인)

2024-10-25 발의

우리나라의 10년 평균 주주환원율은 29%로 선진국 주식시장 평균인 67%는 물론 신흥국 평균 38%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증시와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주주환원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주주환원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주주환원을 실시한 기업에 대해 증가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직전 연도 대비 증가만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은 이미 높은 주주환원을 실시하고 있어 추가

증가의 여력이 많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역차별적 요소가 존재하게 됨

그동안 주주환원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온 기업은 외면하고 그동안 주주환원을 외면해온 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 평균을 월등히 상회하여 주주환원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혜택을 주는 것이 정부의 기업 밸류업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임

따라서, 최소한 신흥국 수준에 맞도록 **시장 평균 주주환원의 120% 이상을 주주환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초과주주환원금액에 대해 100분의 5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자 함 (안 제100조의33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10인)

2024-10-22 발의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에 대하여 법정형으로 자유형과 재산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개인 의견이나 비판에 대해 자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을 남용하거나 고발을 사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벌금’에서 ‘벌금’으로 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안 제70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27인)

2024-10-22 발의

단말기유통법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에 위한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이 저해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로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그러나 지원금 지급 차별을 전면 완화할 경우 지원금 출혈 경쟁 등에 따른 이용자 간 극심한 불평등과 같은 부작용도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지원금 지급 차별 전면 완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한편, 기존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단말기 출고가는 원칙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정하는 것임에도 제조업자에 대한 단말기 가격에 대한 규제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존재하였음

이에 건전한 단말기 유통경쟁 촉진 및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현행법에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관리 책무 부여 등을 신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8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조의11부터 제32조의19까지, 제51조의3 및 제52조의3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25인)

2024-10-23 발의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인 알뜰폰(MVNO)은 도입된지 10년 이상 경과하여, 최근에는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약 20%를 점유하는 등 시장 경쟁의 한 축으로 성장하였음

하지만 알뜰폰 시장의 내면을 살펴보면, 여전히 이통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절반 수준에 육박하며, 최근에는 KB국민은행을 필두로 시중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이 차례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거대 자본의 알뜰폰 시장 장악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그로 인해 경쟁에서 내몰린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기업 알뜰폰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특히 이통사들이 자회사를 통한 우회적 수단으로 알뜰폰 시장을 좌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인 알뜰폰 사업자(MVNO)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자회사 MVNO 개수를 제한하여 독립 MVNO 인수나 자회사의 신규진입을 금지하며, 재판매 사업자의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중소 알뜰폰 사업자 및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 38조의3 신설)

행정안전위원회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024-10-24 발의

현행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과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면서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별법률을 예외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1천억원씩 10년 간 총 1조원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기업 등의 출연 외면으로 인해 매년 목표 대비 20~30% 수준에 그쳐 미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와 재단이 민간기업 등에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독려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적용 예외 법률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3조제12호 신설)

교육위원회

학교 이전 · 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박정훈의원 등 12인)

2024-10-21 발의

신도시 확장과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이 늘어나면서 도시의 인구분포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고, 이에 따른 공교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한계가 있음. 즉 학령인구가 특정 지역에 밀집되고 있는데도, 수십년 전 인구분포 기준으로 초중고교 학생 배정을 하고 있어 교육현장에서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임

특히 학령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멀리 학교를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는 학생들이 늘고 있지만, 학교 배정 조정과 신설학교 설립으로 이런 문제를 시정해야 하는데, 현 법령 체계로는 한계가 있음. 이는 ‘학교의 신설과 이전에 대한 권한’이 교육감에 있는데도,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 위치를 결정하는 법체계가 결정적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 위치를 결정하고 있어 의사결정 과정이 통일되지 않아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대처가 힘들기 때문임. 즉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원하는 위치와 땅을 제공하는 사람이 원하는 위치가 달라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임

예를 들어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들어선 이후 인근에 중학교를 만들려고 할 때 해당 교육청이 주도해 교육수요를 파악해 학교 입지를 결정해야 하지만 학교 입지 결정 권한이 교육청에 있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이 학교의 위치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행정기관에 학교 설치와 이전 권한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며, 학교 이전, 재배치의 경우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면제해 교육 현실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임

교육위원회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3인)

2024-10-22 발의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하고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음. 이미 2022년 등록 기준으로 전체 사립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총 29,535명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정원보다 입학 학생이 적은 미충원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2021년 기준 53.5%에 달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 악화는 이미 현실적인 위기이며, 특히 그 충격은 비수도권 사립대학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바,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0인)

2024-10-24 발의

현행법은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 경품 등의 제공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경품 등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경품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 방식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저해하는 등 게임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경품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을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은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게임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의2 신설 등)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2024-10-23 발의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또는 원산지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자에게 시정명령이나 거래행위금지 처분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배달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입점한 음식점체가 배달하는 음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심지어 이러한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음식점체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 같은 배달앱은 통신판매중개업체로서 입점 음식점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작 소비자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임

이에 입점업체(통신판매의뢰자)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 온라인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6조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의원 등 40인)

2024-10-23 발의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지정학적 갈등으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보를 확고히 하는 것은 많은 국가가 직면한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음. 나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에 부응하여 반도체 등 국가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의 복리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을 활용한 안정적 전력공급이 매우 중요함. 이에 따라, 최근 많은 국가들이 원전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역량을 결집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1978년 고리 1호기 상업운전 이후 가장 경제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오며 국가의 경제와 민생을 뒷받침하였으며, 현재에도 국가 전력의 30% 이상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때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국가의 에너지 근간이 흔들렸을 뿐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어온 우리 원전산업 생태계가 단기간에 고사할 수 있는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였음

최근 전세계적으로 원전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우리나라도 원전정책을 정상화함에 따라 원전 산업 생태계는 고사 직전에서 다시 회복할 기회를 되찾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산업계는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미래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는 데에 필요한 원전산업 기반을 확실히 구축하는 한편, 전 세계적인 원전 활용 확대 기조와 소형모듈원전 보급 등으로 새롭게 성장할 세계 원전시장에서 우리 원전산업의 위상을 공고히 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이 긴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원전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원전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며,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세제·금융 지원과 함께 SMR 연구개발·실증, 클러스터 지정·지원, 원전수출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컨설팅, 보조·용자 지원과 특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 소형모듈원전 상용화, 원전수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원전산업 생태계 구축,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실현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원전산업과 소형모듈원전, 원전수출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 (안 제2조)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산업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원전산업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안 제5조·제6조)
- ④ 원전산업 지원 정책 추진과 제도 수립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원전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7조)
- ⑤ 원전산업 지원 목적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발전원자로운영자로부터 전전년도 전력생산량에 킬로와트시간당 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함 (안 제8조·제9조)
- ⑥ 정부는 원전산업경쟁력 강화등을 위해 기술개발 및 활용 촉진, 금융 및 세제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안 제10조·제12조 및 제14조)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 안정화, 투자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안 제11조·제13조)
- ⑧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전 산업경쟁력 강화등을 위해 원전산업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고,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 ⑨ 정부는 소형모듈원전의 보급·확산 및 수출 진흥을 위해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안 제16조)
-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 후 원전산업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고, 입주기업과 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안 제17조)
- ⑪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 진흥을 위해 원전수출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컨설팅, 보조·용자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20조~제22조)
- ⑫ 원전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 인·허가 신속처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우선처리 특례 등을 적용할 수 있음 (안 제23조~제24조)
- ⑬ 원전산업 관련 기업, 기관, 단체와 업무종사자 등은 협회 등을 설립할 수 있음 (안 제25조)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를 통한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10-24 제출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제재처분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상향하여 위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2024-10-24 발의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중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이상사례 건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의료기기의 특징에 기반한 별도의 안전관리 체계가 중요함

현재 「의료기기법」에서는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한 안전조치를 위해 위해도가 높은 일부 품목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하여 유통기록 등을 통해 그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한편 환자 피해 발생 시 안정적 배상 위해 의료기기 책임보험(공제) 제도도 마련·운영 중에 있음

이와 더불어 부작용 발생 이전부터 실사용 정보의 장기적 추적조사를 통해 이상사례 실마리 정보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조치 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료기기를 별도로 정하여 인체이식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정보, 시술정보, 이상사례 정보 등을 수집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안 제29조)**

환경노동위원회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2024-10-21 발의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는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는 변제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변제금 회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주(직상수급인 포함)가 부담해야 하는 변제금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수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민사절차에 따라 변제금을 회수하던 것을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법인 제도를 악용하여 법인 명의의 재산을 두지 않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변제금을 면탈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출자자에 대해서도 변제금의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수급인에게도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도 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제1항)
-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사업주(직상수급인 포함)에 대해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변제금을 회수하도록 함 (안 제8조의2 신설)
- ③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해야 할 변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법인의 출자자가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함 (안 제8조의3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2024-10-21 발의

현행법은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등의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지 않아 국내 수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 중 40%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이 가시화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병행하여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는 지역 주도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안전인증 면제 대상에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유해·위험기계 등 제조사업자 등록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산업 등을 주도적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안 제84조제2항, 제102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163조제2항 및 제165조제2항 등)

환경노동위원회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1인)**

2024-10-22 발의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자체 내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재 양성에 이바지 할 수 있으나, 현행 규정 상 클러스터 조성 부지에 대한 임대 및 영구축조물 설치 근거가 없어 부지 매입을 위한 부가적 행정 절차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을 통해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을 가능케 하고자 함

이에 미래 핵심산업인 녹색산업과 연관 산업간의 융복합을 통해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국가·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에 대해 안정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국·공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는 등 여러 가지 지원 시책 규정을 보완함** (안 제14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2024-10-23 발의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물질의 유출 누출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발생된 사실을 알았거나 오염토양 발견으로 인한 신고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들의 정화 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명할 수 있음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정밀조사 결과 법에 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정화 책임자에게 우려기준이하로 토양을 정화하도록 정화명령을 내리고 있음

하지만 정화책임자가 정밀조사 명령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정화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화책임자는 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 토양정화를 계속해서 미루는 상황임

정밀조사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한 정화책임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정화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정화를 끝내지 못하면 벌금 등의 처분까지 받고 있음에도 정밀조사에 응하지 않은 정화책임자는 과태료만 내면 토양정화 명령은 받지 않아도 되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기존 과태료처분에서 벌금처분으로 벌칙을 적용하여 오염토양 부지의 정밀조사 명령을 즉시 이행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제18호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회의원 등 14인)

2024-10-23 발의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오랜 기간이 걸려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1회용 플라스틱으로 인해 토양, 하천, 바다 등에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음. 또한, 화석연료를 주 원료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후변화를 악화시키고 있음. 이에 세계 각국은 1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고,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 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음

현행법은 식품접객업 또는 대규모점포 등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1회용품의 사용 또는 무상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대해 1회용품의 사용금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유상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1회용품의 사용 감량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예외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유상으로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2항)

국토교통위원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2024-10-21 발의

현행법은 2000년 이후 자유업으로 유지되던 물류창고업을 2012년 등록제로 전환하여 바닥 및 토지 면적 등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관계 부처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미등록 사업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 당시 등록기준이 난해하여 이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최초 등록기간을 놓쳐 미등록 상태에 있게 되었으나 형벌에 해당하는 벌칙으로 인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존재함에 따라, 제재조치 수준을 완화하여 미등록 업체들의 자진등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체의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영세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벌칙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려는 것임 (안 제65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2024-10-24 발의

최근 항공 마일리지 사용 및 지연 보상과 관련하여 각종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대형항공사 간 합병이 임박해 오면서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우려 또한 제기되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이나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항공운송사업의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항공운송사업의 경쟁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항공교통사업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 및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필요적 포함사항에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및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 현황을 추가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조제2항제10호 신설 등)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국정감사 일정

일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 · 시간
10. 28.(월) 1개 위원회	기재위	<종합감사> 기획재정부, 국세청 외 5개 기관	국회 10:00
10. 29.(화) 2개 위원회	기재위	<종합감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8개 기관	국회 10:00
	정보위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10:00
10. 30.(수) 2개 위원회	정보위	국가정보본부	국회 10:00
		국군방첩사령부	국회 14:00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감사종료후
	여가위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7개 기관	국회 10:00
10. 31.(목) 3개 위원회	운영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10:00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미래연구원	국회 14:00
	정보위	경찰청	국회 10:00
		[현장시찰] 777사령부	777사령부(성남) 14:00
	여가위	[현장시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10:00
11. 1.(금) 1개 위원회	운영위	대통령비서실 · 국가안보실 · 대통령경호처	국회 10:00

2.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	10/28(월) 10:30	- 법안 등 심사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10/29(화) 10:00	- 법안 심사
예결위	공청회	10/31(목) 14:00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0/28(월) 19:00	<하와이 연가>를 통해 본 대한민국 이민정책 방향	이강일·이재정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10/29(화) 10:00	혁신의 플랫폼, 미래모빌리티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책 방안 세미나	서범수·김성원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10/29(화) 17:00	ICAIE2024 ESG together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시상식	김소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대회의실
	10/30(수) 14:00	플랫폼 독점화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세미나 : 모빌리티 를 중심으로	박 정 의원실 등	의원회관 4간담회의실
	10/30(수) 14:00	[국회물포럼 제27차 토론회] 국가전략산업 용수공급 방안 토 론회	한정애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10/30(수) 14:00	[여·야 공동토론회]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 할까	박홍근·주호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10/31(목) 10:00	공익법인 사회투자 제도개선 토론회 : “공익목적 투자제도 도 입을 중심으로”	윤호중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10/31(목) 10:00	미활용열 대토론회	김성환 의원실 등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10/31(목) 14:00	산업안전보건 노사정 사회적 합의 얼마나 이행되고 있나?	김주영·김형동 의원실 등	의원회관 6간담회의실
	10/31(목) 15:00	[제5회 건설엔지니어링 정책포럼] 건설엔지니어링 현장에서 답을 찾다 : 산업의 미래	박용갑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11/1(금) 10:00	한·체코 미래 경제 협력 토론회 : 한·체코 원전 수주 이후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허성무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자료집 등	10/28(월)	「THE 현안」 제31호(2024-31호) 발간	국회도서관	
	10/30(수)	「금주의 서평」 제701호 발간 - 도서명 : 솔로 에이저 - 저자 : 사라 제프 게버		
	10/30(수)	「World&Law」 2024-19호 발간		
	10/31(목)	「현안, 외국예선」 2024-22호(통권 제94호) 발간		
	10/28(월)	2025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10/29(화)	재정전망 및 조세분석 보고서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5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10/21(월)	「THE 현안」 제30호(2024-30호)	국회도서관	
	10/22(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58호(2024-20호)		
	10/23(수)	「금주의 서평」 제700호 - 도서명 : 음모론이란 무엇인가 - 저자 : 마이클 셔머		
	10/23(수)	「Data&Law」 2024-11호		
	10/24(목)	「NABO 경제동향」 제45호	국회예산정책처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0.21~10.27)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0/21(월)	기업지배구조	주주총회 소집권자인 주주에게 명의개서대리인에 대한 주주명부 작성 요청권을 인정받은 사례
10/22(화)	엔터테인먼트 · 스포츠	디아라 사건 관련 ECJ 예비 결정(Preliminary Ruling)과 그 시사점: FIFA 규정에 미칠 영향
10/23(수)	방송통신(TM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신속 처리제 도입 및 적극행정 기반 조성 등 노력
10/24(목)	중국	중국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 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의 개정과 시사점
10/25(금)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7 (2024년 10월 4째주)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